

[서식 예] 답변서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청구에서 법정해제 항변(이행불능)]

답 변 서

사건번호 2000가소0000 매매대금

원 고 000

피 고 ◇◇◇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1. 기초사실관계

피고는 원고와 20〇〇. 〇. 〇.경 원고 소유 강아지 한 마리에 대하여 100만 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인정하고 나머지는 모두 부인합니다.

- 2. 법정해제의 항변
 - 가. 매매계약의 내용

원고는 집에서 키우던 개가 새끼를 출산하자 이 새끼들을 모두 분양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고, 피고는 이를 보고 원고에게 연락하여 그 중 암컷인 새끼 강아



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그 인도 시기는 어미 개와의 애착형성시간을 약 2주일 준 이후에 하기로 하였습니다.

나. 이행불능

그러나 새끼 강아지 5마리 중 암컷은 단 한 마리뿐이었는데, 원고와 피고가 계약을 체결한 지 며칠 되지 않아 위 암컷 강아지가 알 수 없는 병으로 죽었고, 원고는 위와 같은 내용의 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을 제1호증 원고의 문자내용). [->원고의 채무이행이 불가능한 사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이 계약을 유지할 수 없음을 이유로 내용증명을 보낸 사실이 있습니다(을 제2호증 내용증명). [->해제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수컷 강아지를 인도하며 계약의 이행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원고와 피고의 매매계약은 이행불능으로 인하여 법정해제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할 것입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에 대해 매매대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으므로 원고 청구의 기각을 구하고자 합니다.

입 증 방 법

1. 을 제1호증 원고의 문자내용

을 제2호증 내용증명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1통

2000. 0. 0.

위 피고 ◇◇◇ (서명 또는 날인)



제출법원	본안소송 계속법원
│ 제출부수 ├──	답변서 1부 및 상대방 수만큼의 부본 제출
답변서의 제 출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함. 다만, 피고가 공시송달의 방법에 따라 소장의 부본을 송달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 법원은 피고가 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음. 다만, 직권으로조사할 사항이 있거나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상고심에서 피상고인은 상고인의 상고이유서를 송달 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음(민사소송법 제428조 제2항).
의 의	답변서는 피고나 피상소인이 본안의 신청에 대한 답변하려는 사항을 기재하여 최초로 제출하는 서면을 말함(민사소송법 제148조, 제428조, 제430조).
기 타	답변서는 소장의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과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으로 구성하는데청구취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취지로 작성 .청구원인: 원고의 청구원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인정할 부분과 부인할 부분을 구분, 부인할 부분에 대하여 이유를 밝히고. 인정할 부분에 대하여도 항변사유가 있으면 항변과 동시에 이유를 밝혀야 함당사자가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한 적법한 소환을 받고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답변서 기타 준비서면마저 제출하지 아니하여 상대방이 주장한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그 결과 의제자백(자백간주) 된 피고들과 원고의주장을 다툰 피고들 사이에서 동일한 실체관계에 대하여 서로 배치되는 내용의 판단이 내려진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다53789 판결)응소관할이 생기려면 피고의 본안에 관한 변론이나 준비절차에서의 진술은 현실적인 것이어야 하므로 피고의 불출석에 의하여 답변서 등이 법률상진술 간주되는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함(대법원 1980. 9. 26.자 80마403 결정). 원고의 청구원인사실에 대한 주장을 부인하는 취지의 피고의 답변서가 진술되거나 진술 간주된 바 없으나 동 답변서가 제출된 점으로 미루어 변론의전취지에 의하여 원고의 청구를 다툰 것으로 볼 것임(대법원 1981. 7. 7. 선고 80다1424 판결).